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. 5. 30 선고 2016가단917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17. 5. 16.

판결 선고2017. 5. 30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포항시 남구 D 전 523평 중

가. 피고 B는

(1)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(나) 부분 지상 컨테이너 사무실 18㎡와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(다)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창고 140㎡를 각 철거하고, 위 각 대지를 인도하고,

(2)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(가) 부분 지상 철골 창고 135㎡에서 퇴거하라.

나.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(가) 부분 지상 철골 창고 135㎡를 철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변경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나상훈

별지